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2,250,025	24,067,501
일반회계	684,559,847	20,536,795
특별회계	117,690,178	3,530,705
기타특별회계	117,690,178	3,530,7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75,479	203,264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5,448,109	2,563,443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66,220	22,98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1,008,709	30,261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259,749	7,79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8,721	3,862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896,200	176,88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28,303	18,849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87	66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6,776,501	503,29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업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사업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